

울산지방법원 2021. 7. 16 선고 2020가단123569 판결 [원상회복 및 점유회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민

피 고 울산광역시 남구

소송대리인 B, C

변 론 종 결 2021. 6. 18.

판 결 선 고 2021. 7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D 임야 89㎡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울산 남구 D 임야 89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등 무단 점유하면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으므로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.

나. 판단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 소유인 사실,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2015. 6. 12.부터 2020. 6. 11.까지 및 2020. 6. 12.부터 2025. 6. 11.까지 각 경작용도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강경숙